

공항청사 조도기준 규격 개정

자료제공/교통부

공항은 한 국가의 관문이며, 또한 그 지방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듯이 공항의 이용자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공항은 그 조형이 갖는 상징성과 공간감이 갖는 독특성을 갖춘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명쾌하고 친切함을 갖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실내공간의 조명 및 시각효과 중대와 심리적인 안락함과 추구 등 공항으로서의 시각정보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시(視)환경을 창출하여야 함은 공항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해결되어져야 하는 기능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조도기준규정에 는 공항청사에 대한 조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공항청사간의 조명설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어렵다.

공항청사 조도기준을 통상적으로 철도역사 조도기준(KS A 3011 부표 8)을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현재의 공항 조도분포가 다양하고 설계 용역시에도 기준적용이 각기 달라 행정업무의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다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부에서는 공항청사 조도기준을 설정해 공업표준화(KS)를 위해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연구조사를 의뢰, 조도기준 KS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공업진흥청에 승인을 요청, 공항청사 조도기준(KS A 3911 부표 14)을 마련했다. 이로써 교통부는 공항청사 조명을 적정수준으로 설치 관리하여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업무능력 제고 및 공항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부표 14 공항청사 조도기준>

조도 Lx	장 소	
	A급 청사	B급 청사
1500		
1000		
750		
600	점시대 체크인 카운터	
500	객 리 대합실, 출장홀, 일반 대합실, 안내 가운터	점시대, 체 크인 카운 터
400		객 리 대합 실 불암홀 인 반대 합 실
300	수화물처리장, 화장실*, 동로, 승강장	안내 카운 터
200		
150		
100		
75		
50		수화물처리장, 화장실등로*, 승강장

- <비고> 1. *표는 좌변기의 직상면에 국부조명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공항 이용자의 동선상(動線上)에서의 조도의 차이
는 3: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그 이상
이 될 경우 동선 균제도(均齊度)의 개념에 의하여
중간 장소에 완충 조도지역을 설치한다.
3. 국제급 공항 혹은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의 공
항의 경우는 A급에 준하고 이외의 경우는 B급에
준한다.
4. 이 조도기준은 적용장소 또는 주변환경 상황에 따
라 조정될 수 있다. Ⓜ